

# (사)한국연극협회 정관

1963. 01. 29. 제정  
1963. 02. 22. 개정  
1977. 03. 23 전면개정  
1982. 11. 05. 개정  
1987. 03. 03. 개정  
1991. 09. 03. 개정  
1996. 08. 24. 개정  
1999. 03. 06. 개정  
2004. 03. 03. 개정  
2007. 07. 20. 개정  
2013. 02. 25. 개정  
2016. 02. 22 일부개정  
2017. 02. 24 일부개정  
2019. 02. 25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 ①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그 산하에 별표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에 지회를 두고 지회 산하에는 시, 군, 구 지부를 둔다. 또한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본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www.ktheater.or.kr'로 한다.  
[2017.02.24 개정]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연극예술의 창달 발전을 기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 연극예술의 향상 보급 및 보존
- ② 연극인 및 연극 단체 지도 육성
- ③ 연극의 국제교류
- ④ 연극상 제도
- ⑤ 경연대회 개최
- ⑥ 연극에 관한 출판

- ⑦ 공연에 수반하는 제반사항
- ⑧ 평생학습원 등 연극예술교육[2016.02.22 개정]
- ⑨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자격)

- ① 본 협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연극 예술인 및 이들이 조직한 연극단체로서 구성한다. 입회는 개인 단체 모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입회 및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개인 및 단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① 발의 및 의결
- ② 선거 및 피선거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 제9조(징계)

- ① 회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기한부 권리 정지
  3. 제명

##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부이사장 5인(수석부이사장 1인, 부이사장 4인) [2019.02.25. 개정]
- ③ 이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지회장은 당연직, 선출은 10인 이내로 한다.
- ④ 직능별 협회를 고려하여 추천이사 10인 이내로 한다. (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43명 이내로 한다.)~~단, 희곡작가협회, 연극배우협회, 연극평론가협회, 연극연출가협회 등~~[2019.02.25. 삭제]
- ⑤ 감사 2인
- ⑥ 운영자문위원 약간 명
- ⑦ 고문 약간 명

제11조(선출)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선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2019.02.25. 개정] 하고 이사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2022년부터 시행한다)[2019.02.25. 개정]

제13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본 협회의 임무를 통괄한다.

제14조(직무수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 선거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장 순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가 유고시에는 차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의 의결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운영자문위원 및 고문)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은 본 협회 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본 협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의 2(임원의 탄핵) 이사장 등 임원이 협회 명예 훼손 및 운영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당해연도 정기총회 대의원 재적인원 2/3 찬성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회의 구성원의 2/3 찬성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회 회원 10명당 1인씩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대의원의 선출은 총회 10일 전까지 특별시, 광역시, 도지회 총회에서 선출하되 산하 각 지부, 단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9조(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본 협회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이 사 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중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정기이사회는 2개월에 1회씩 격월로[2016.02.22 개정] 개최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④ 정관 변경 안 및 예산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징계 및 표창의 심사에 관한 사항
- ⑥ 입회금 및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 ⑦ 회원 입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⑧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5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전항의 의결권은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분과위원회

제26조 내지 제29조 삭제[2004. 03.]

## 제7장 재 정

제30조(재산)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31조(세입 등)

-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2017.02.24 개정]
  4. 사업수익금
  5. 기타 잡수입금
- ② 제1항의 3호에 따른 기부금 중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정기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제2조에 따른 본 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2017.02.24 개정]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제8장 사무처

**제33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2016.02.22 개정] 둔다.

**제34조(직원)**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부서별 직원을 둘 수 있다.[2016.02.22 개정]

### 제35조(사무처 등)

- ①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2016.02.22 개정]
-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2016.02.22 개정]
- ③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2016.02.22 개정]
- ④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2016.02.22 개정]

## 제9장 보 칙

**제36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2017.02.24 개정]

### 제38조(정관 변경)

- ① 본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회 그리고 시군구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단 이사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정관과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 칙('77. 3. 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본 협회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협회의 초대 임원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 부 칙('82. 11. 5)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83. 3. 3)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91. 9. 3)

이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96. 8. 24)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99. 3. 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당시 이사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부 칙('04. 3. 3 )

①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07. 2. 10 )

①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3. 2. 25 )

①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6. 2. 22 )

①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2. 24 )

①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2. 25 )

①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2조에 의한 시도지회는 다음과 같다.

- (1) 서울특별시지회
- (2) 부산광역시지회
- (3) 인천광역시지회
- (4) 대전광역시지회
- (5) 대구광역시지회
- (6) 광주광역시지회
- (7) 울산광역시지회
- (8) 경기도지회
- (9) 강원도지회
- (10) 충청북도지회
- (11) 충청남도지회
- (12) 경상북도지회
- (13) 경상남도지회
- (14) 전라북도지회
- (15) 전라남도지회
- (16)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17) 세종특별자치시지회